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.

발 의 자 : 안철수 의원

찬 성 자 : 인

제안이유

최근 영화산업계는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%를 점유하여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된 상영기회를 고루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, 전국 상영관의 약 90%를 점유하고 있는 위 업체들 중의 일부는 한국영화 배급시장 매출의 40~60%('12~'15년)를 점유하고 있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을 하면서 더욱 비계열사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잠식시키고 있음.

이와 같은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·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, 예술·독립·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,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“영화”의 정의에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, 온라인 등을 포함시킴(안 제2조).
- 나. “복합상영관”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).
- 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(안 제3조의9 신설).
- 라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,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- 마.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·요일별 관객수, 상영 시간대,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함(안 제41조의2 신설).
- 바.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42조의2 신설).

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화상영관 등의”를 “영화상영관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, 온라인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“복합상영관”이란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9(영화관객의 피해예방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화관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정치적 중립성, 자주성, 전문성을 준수하여 다음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

원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겸영의 제한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(이하 “대기업”이라 한다)은 영화배급업,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예술영화”를 “예술영화·독립영화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에”를 “지원 등에”로 한다.

다만,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저예산이 투입된 영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

제41조제1항 전단 중 “상영기간”을 “상영시간대, 상영요일, 상영기간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2·제41조의3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영화상영업자의 의무)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·요일별 관객 수, 상영 시간대,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3(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)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 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

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.

③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2조의2(복합상영관의 제한 등) ①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, 그 결과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.

제45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한 때

6의3.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98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4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지

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영시간에 상영을 하지 아니한 자  
6의3.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또는  
예고편영화를 상영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화”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<u>영화상영관 등의 장소</u> 또는 시설에서 공중(公衆)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.</p> <p>2. ~ 1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2. ~ 2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u>영화상영관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, 온라인 등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의2. “복합상영관”이란 영화 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.</u></p> <p>12. ~ 2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의9(영화관객의 피해예방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제14조</u></p>

제14조(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)

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~ 1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5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~ 12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항제10호에 따른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화관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.

제14조(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)

① -----정치적 중립성, 자주성, 전문성을 준수 하여 다음-----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기금의 용도) ①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

8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겸영의 제한) 「대·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

제38조(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(이하 “전용상영관”이라 한다) 을 지원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1. (생략)
2. 애니메이션영화·소형영화·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

3. (생략)  
<신설>

② (생략)  
③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기업(이하 “대기업”이라 한다)은 영화배급업,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다.

제38조(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---예술영화·독립영화

3. (현행과 같음)  
4. 저예산이 투입된 영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

② (현행과 같음)  
③ -----지원 등에-----  
-----



<신 설>

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.

③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2조의2(복합상영관의 제한 등)

①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



제98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7. ~ 9. (생략)

③ (생략)

제98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제4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영시간에 상영을 하지 아니한 자

6의3.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또는 예고편영화를 상영한 자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